

'97 주요업무계획

감 사 실

보 고 순 서

I. 기본 현황

II. '96 감사실적 및 성과

III. '97 자체감사운영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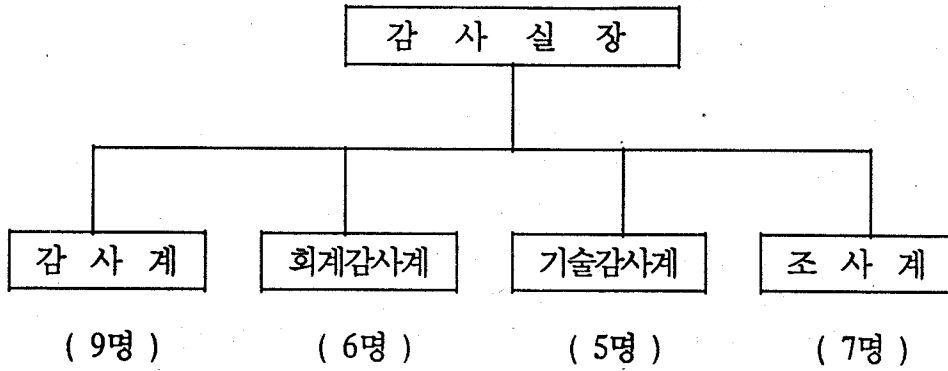
1. 정기 행정감사 실시
2. 정책감사 실시
3. 비위조사활동 강화
4. 시·군 자체감사 활성화
5. 책임행정 강화
6. 감사기능 활성화

VI. 특수시책

1. 감사중복 지적사례 예방 순회교육

I 기본 현황

○기구 : 1실. 4계



○정. 현원

(단위 : 명)

구분	총원	4급	5급		6급(14명)						7급		기능직	일용직	
			행정	토목	행정	토목	보건	건축	환경	농업	세무	행정			화공
정원	28	1	3	1	7	1	1	2	1	1	1	3	1	3	1
현원	28	1	3	1	7	1	1	2	1	1	1	3	1	3	1

○감사대상기관

계	시군(출장소)	외청·사업소	조합	의료원	비고
43기관	12	10	19	2	

II. '96 감사실적 및 성과

○ '96년도 감사 방향은

- 국·도정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성과측정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태를 해소하여 개선토록 하였고
- 민원업무의 신속·정확·공정한처리 여부를 확인하였으며
- 부실공사 추방과 세무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"힘있는 중복건설"의 견인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었음

○ 그 결과

정기행정감사

- 행정상 조치 : 689건 (시정 356, 주의 332, 개선 11)
- 재정상 조치 : 96건 1,266백만원
- 신분상 조치 : 180명 (중징계 1, 경징계 32, 훈·경고 147)
- 우수공무원표창 : 35명

취약분야 특별감사

- 감사대상 _____ 3개분야
 - 보조금 관리실태 감사
 - 체납지방세 징수관련 비리 감사
 - 종합토지세 징수관련 비리 감사
- 감사중점
 - 보조사업 수행 실태 및 자금 집행상황
 - 지방세 부과 징수 및 횡유형 실태
- 감사성과
 - 행정상 조치 : 238건 (시정 209, 주의 25, 개선 4)
 - 재정상 조치 : 118백만원 (추징 55, 감액 1, 기타 55)
 - 신분상 조치 : 32명 (고발 2, 경징계 3, 훈계 27)

○ 특기사항으로는

- '92~'96 (5년간)의 자체감사 우수 사례와 감사착안 사항등을 수록한 "감사업무편람" 600부 발간 배부
- 시·군 감사책임자를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감사부서의 위상제고와 사기진작을 도모

III. '97 자 체 감 사 운 영 계 획

○ '97 감사여건과 전망

- 민선 지방자치 3년차로써 상급기관의 조정 통제 기능이 미약해지고 기관장의 조직장악력이 부족하여 조직내부의 기강확립과 국·도정 시책추진을 소홀히 하는 관리부재 현상이 예상되고
- 특히 '97년은 대통령선거 해로써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기강해이와 무사안일 풍조가 우려되어 기강확립을 위한 감사·감찰 활동의 강화가 요망됨
- 국가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OECD 가입등으로 행정주변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지방행정은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,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중요한 시기임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 되어야할 것임

'97 기본 방향

-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"국가경쟁력 10%이상 높이기" 지원 감사
- 주요현안 및 시책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실시로 공무원의 책무성 확보 및 사업효과 거양
- 부정, 비리, 무사안일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

1. 정기행정감사실시

○ 종합감사 ————— 17개 기관

- 시 군 : 5개기관 (청주시.충주시.제천시.보은군.증평출장소)
- 도사업소 : 5개기관 (공무원교육원. 농촌진흥원. 충북개발사업소
내수면개발시험장. 자연학습원)
- 단 체 : 7개기관

┌	임업협동조합 (충주.청원.보은.영동.괴산.단양)
	청주의료원

○ 부분감사 ————— 4개 기관

- 대상기관 : 옥천군, 진천군, 괴산군, 단양군
- 감사중점 : 세무.회계.시설공사분야

○ 기장감사

- 감사대상 : 도, 시군산하기관
- 감사시기 : 연말년시. 설날·추석전후. 휴가철등
- 감사중점 : 불법행위. 민원사항. 공직자복무실태

2. 정책(기획)감사 실시

< 필 요 성 >

- 당면 국·도정 주요시책 추진실태를 일제점검 업무추진 독려
- 시책추진상의 문제점을 심층분석, 시정·보완

○ 대상분야 (예시)

- 「경쟁력 10%이상 높이기」 등 국가시책
- 도정주요 시책사업 추진실태

○ 감사분야 선정

- 주요시책 및 취약분야에서 선정
- 특정분야에 대하여는 관계부서 의견수렴

○ 결과조치

-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에 협조요청, 중앙에 건의

3. 비위 조사활동 강화

○ 조사대상

- . 특별 하명사항
- . 각급 사정기관 비위첩보
 - B.H, 국무총리실, 감사원, 경찰청등
- . 진정서·민원등 주민제보 사항
- . 언론보도 비위사항

○ 조사방법

- . 도 직접조사
 - 특별 하명사항
 - 시·군계장급 이상, 공직자 관련비리
 - 계속적인 진정등 고질, 반복민원
 - 조직적·구조적 비리등 시·군에서 처리가 부적정한 경우
 -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사항
- . 시·군자체 조사
 - 시·군 계장급이하 공직자 관련비리
 - 시·군 자체수집 첩보

4. 시·군 자체감사 활성화

< 필 요 성 >

- 비리발생소지 사전 차단을 위한 자체감사 강화
- 일상적 · 반복적 업무에 대한 상시 점검체제 확립

○ 대상분야 (예시)

- 공과금 수납, 지방세 · 세외수입등 회계분야 일일결산 실태
- 농지증명발급 업무등 읍·면 기초행정
- 수입증지 수불등 현금취급업무에 대한 회계감사
- 대형공사장, 재난위험시설, 유도선 운행등 안전관리 분야
- ※ 대상분야는 기관실정에 맞게 확정 실시

○ 감시운영

- 「전 감사대상기관의 모든업무에 있어 부조리 발생을 자체감사에서 일단 차단한다」는 원칙 준수
- 시·군 본청, 사업소, 읍·면·동을 대상으로 자체감사 실시

○ 결과조치

- 감사결과는 기관장에 보고확행
- 감사결과를 기강확립 추진실적 보고시 포함제출

5. 감사기능 활성화

○ 실무연찬회 개최

- 개최시기 : '97. 4월중
- 개최장소 : 공무원교육원
- 참석대상 : 91 명 (도 24, 시군구 67)
- 연찬내용 : 정신교육, 직무교육(감사기법·법규등), 사례발표 및 토의

○ 감사원위탁 전문교육

- 교육대상 : 도 및 시·군 감사담당 공무원
- 교육인원 : 35 명(도 5, 시·군 20)
- 교육시기 : 2 ~ 12월중
- 교육과정 : 감사관리자·감사실무·공사실무·회계실무

6. 책임행정 강화

○ 기관장 경고

- 지역행정 종합관리자로서 성실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행정행위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「기관장경고 또는 기관경고」(중대사안은 공개 경고)
※ 공무원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(내무부훈령) 참고

○ 관련공무원 문책

- 기관장이 결심한 사항이라도 명백하게 위법·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경감하지 않고 관련공무원 엄중문책
- 기관장의 지시사항이라도 명백한 위법·부당사항은 연대책임제를 적용
결재권자이외에 기안자·보조기관 책임자도 엄중문책
- 국·도정시책에 위배하여 업무추진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도 징계양정규정을 엄격하게 적용·문책

○ 문책강화 기준

— < 신상필벌 일벌백계로 감사효과 극대화 도모 > —

- 고의,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사항
 - 행위자 징계
- 법령위반사항, 부당행위가 조직내부 결정에 의한 경우
 - 행위자, 감독자, 연대책임제 적용
- 경미한 불법·부당행위라 하더라도 재발할 개연성이 많은 경우
 - 행위자 징계
- 행위자의 누범·재범·상습적인 행위로 야기된 경우
 - 행위자, 감독자 연대책임제 적용
 - ※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(총리훈령 제305호)에 의거
고발 확행

VI. 특수시책

1. 감시중복지적 사례예방 순회교육

< 필 요 성 >

- 감시중복 지적사례 전파
- 유사 지적사례 재발 예방
- 실무자의 업무처리 능력 배양

○ 추진방침

- 감사 지적사례 전파로 업무처리 요령 숙지
- 시·군 읍·면·동 취약업무 담당자 소집교육

○ 추진계획

- 교육 시기 : '97. 10월중
- 교육 대상 : 지방세, 회계, 시설공사, 농지전용업무 담당자
- 교육 방법 : 12개 시군을 3개 시군씩 분할하여 순회교육